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24일, 조인철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사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4.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사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4.3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사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5.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인철의원)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출연연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첫째, 연구현장의 창업 위축 문제는 법률의 제약뿐만 아니라 일선 연구기관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내부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큼. 현행법 체계에서도 일정한 신고 및 통제 절차를 거치면 지분 보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애초에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분 처분이나 직위 사임 등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단순히 법률에 예외를 두어 가능하다고 재차 선언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되고 합리적인 ‘이해충돌 방지 및 창업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기관이 임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지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 주식을 사적이해관계자 요건에서 완전히 배제할 경우, 지분 보유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마저 소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사례를 보면, 창업자가 창업 대상 기술의 책임자 및 관련 연구장비 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던 중 창업기업에 기술이전 및 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하여 책임자를 다른 연구자로 변경한 바 있음. 또한, 출연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연구의 경우, 출연연 연구자가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을 해당 연구의 참여기업으로 포함시켜 정부 연구비 등을 지원받게 하는 등 실

질적인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처럼 창업 지원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 보유 자체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최소한 소속 기관이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분 신고 등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서 특례 적용의 핵심 전제 요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술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 법체계상 공공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 명확성과 타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2항의 조문에 해당 정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술을 활용하여...)하여 그 적용 대상을 엄격히 특정하는 자구 수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32조의2제3항제2호를 통해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 제공 대가 수수 등을 폭넓게 허용할 경우, 연구기관이 보유한 미공개 국가 R&D 정보나 타 기업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4. (생략)

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7. ~ 14. (생략)

의 영업비밀 등이 창업기업으로 사적 유출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법률 적용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안 제2호의 정보 제공 허용 범위를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지식이나 정보’ 등으로 엄격히 한정하는 자구 수정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